



#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기준 및 조건

## 1. 신청대상

- 가. 당해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
- 나.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있으며,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
- 다. 당해 지역 내 근무를 하고 있거나,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확인된 자

## 2. 배점기준표

기 준 항 목		점 수	
공동 배점	주택·사업장·근무지와 주차구획간의 거리 - 당사가 인정하는 지도상 직선거리로 측정	10m 이내	30
		30m 이내	25
		50m 이내	20
		70m 이내	15
		100m 이내	10
		100m 초과	5
	거주·사업·근무 기간 거주자 : 주민등록초본 상 최종전입일자 기준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기준 상근자 : 재직증명서 상 입사일 기준	20년 이상	35
		10년 이상 ~ 20년 미만	25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20
		3년 이상 ~ 5년 미만	15
		1년 이상 ~ 3년 미만	10
		1년 미만	5
가산점	대기 기간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점수 산정	4년 이상	25
		3년 이상 ~ 4년 미만	20
		2년 이상 ~ 3년 미만	15
		1년 이상 ~ 2년 미만	10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5
특별 가산점	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	신청자 본인만 해당 (관련 확인원 제출)	10
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	신청자 본인만 해당 (관련 확인원 제출)	5
	다자녀가정(2자녀 이상)	막내 만 18세 이하 (관련 확인원 제출)	
○ 해당 항목 점수를 총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선정 ○ 합산배점이 같을 경우 거리→거주기간→대기신청기간 순으로 비교하여 순위 선정 ○ 배점기준표상 점수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○ 특별가산점은 점수가 높은 1항목만 적용			

- 가. 배정방법 : 제출 서류를 기초로 '배점기준표'상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
- 나. 배정대상 : 정기 신청기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 배정  
※ 정기 배정 이후 여유분 발생 시 차순위 배정
- 다. 감면 관련 사항

감면율	감면대상	증빙서류
100%	성실납세자	성실납세증 차량표지(스티커)
파주시민 100%	장애인(중증)	복지카드 또는 장애인표지
	국가유공자·상이자	국가유공증서
	고엽제후유의증환자	보훈청등록증서
	5·18 민주유공자	5·18 민주유공증서
	병역명문가 / 의상자	병역명문가 증서, / 의상자증
50%	장기기증자 및 유족	장기기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
	경형·저공해 자동차	자동차등록증
	자원봉사자	자원봉사자증
	장애인(경증)	복지카드 또는 장애인표지
	다자녀가정	주민등록등본(막내 만18세 이하)
	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	주민등록등본

※ '□'의 감면대상자가 파주시민일 경우 100% 감면

## 3. 배정제외대상자

- 가. 파주시 관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 차량
- 나. 관련 법령상 차고지(주차장) 확보 의무가 있는 사업용 차량
- 다. 중기, 건설기계, 2.5톤 이상의 화물차량 및 1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등  
라. 노점상 차량(화물 2.5t 미만)은 배정금지
- 마. 3년 이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 중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
- 바.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하여 환불 이력이 2회 이상인 경우

## 4. 허가조건

- 가.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지정차량·지정시간·지정구획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단속에 대한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음
- 나. 허가구획선 내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, 배정받은 주차구획은 배정자가 철저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함
- 다. 차량출입구 신설, 건축공사, 운영방법 변경 등으로 이용불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라. 폭우·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차면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
- 마. 주차구획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(임의 양도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)
- 바. 주차면을 주차용도 외 사용 시 취소될 수 있음(상행위·물품적치 등)
- 사. 주차요금 납부 후 이용이 가능하며, 미납 시 배정취소, 배정취소자 주차 시 단속 및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 됨
- 아. 지정차량 변경 시 반드시 파주시에 변경 신청 또는 연락하신 후 이용하여야 하며, 위반 시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## 5. 배정(지정) 원칙

- 가. 주차구획은 개별 구획으로 배정하며, 이용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며,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요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선납해야 함
- 나. 주차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 취소하고 차순위 자에게 배정함  
※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됨
- 다.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자동차로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간주함
- 라. 진출입구의 설치, 각종 공사 등 주차구획의 이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대체 주차장은 제공하지 않으며, 이 경우 잔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함.
- 마. 중도 이용 중단 희망 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 내로 환불 처리함
- 바. 주차구획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- 사. 배정은 거주자 1가구 1차량(1대), 상근자 1인 1차량(1대) 배정을 원칙으로 함
- 아.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감면을 적용 및 폐지에 대해 감면을 적용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마감일까지의 감면 요금을 적용함

## 6. 배정취소 요건(직권취소)

- 가. 배정 후 주차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
- 나. 주차구획 이용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
- 다. 신청서 허위(착오) 기재,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된 경우  
※ 이 경우 배정 전·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라. 진출입구 설치,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 
마. 그 밖에 이용자가 허가조건, 배정(지정) 원칙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## 7.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

- 가.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파주시가 책임지지 않으며,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
- 나. 정당한 배정 차량, 이용기간,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시간 외에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됨
- 다.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점수와 배정 결과는 신청서 상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공지하며, 오기입(누락)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
- 라. 파주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받은 자는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마.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, 청결을 유지해야 함
- 바. 그 밖에 이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파주시의 해석을 우선 함
- 사.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, 증빙 확인 전에 납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소급적용이 불가함
- 아. 배정은 6개월 단위 순환배정이며, 배정기준으로 인하여 미배정 시 대기자 명단에 자동으로 등록함
- 자. 배정된 주차구획에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 불가 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여야 하며, 인근 공영주차장 개방 또는 안전신문고 접수에 따라 익월 납부금액에서 20%를 감면함(100% 초과 불가)  
• 평일 09:00 ~ 18:00 ▶ 공영주차장 무료 등록요청(☎031-940-5944)  
• 이외 시간 ▶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

## 8. 주차요금 기준

구분	주간	야간	전일
이용시간	09시 ~ 18시	19시 ~ 익일 08시	24시간
주차요금	20,000원 / 월	20,000원 / 월	30,000원 / 월

파주시청

(☎ 031-940-5944 / FAX: 031-940-4789)

